

서울고등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203561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청구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203561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22 선고 2021가합2382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우석

변론종결 2022. 12. 2.

판결선고 2023. 1. 1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22. 선고 2021가합2382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4,926,3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고,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정준영, 판사 민달기, 판사 김용민